

긴급입찰 공고 사유서

□ 개요

- 용역명: 케냐 몸바사 신니알리 교량 건설 및 도로축 개선사업 예비 타당성조사
- 용역기간: 계약일로부터 270일
- 예정금액: 금 1,000백만원 (부가가치세 포함)

□ 목적

-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우리기업의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「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업무」를 시행

□ 긴급입찰 사유

-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(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-16호, 2022.07.01.)에 따라 조속한 용역 추진 필요
- 과업성과품 제출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공고기간 단축 필요

□ 근거법령

-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

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-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
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
-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